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LG전자 주관기관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G전자,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LG전자 동반성장담당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중견기업(LG전자 협력사)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I.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국내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굳건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하여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 LG전자 협력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종)

□ 지원 규모 : 총 29개사 내외

○ 지원 예산 : 49.8 억 (중소벤처기업부 24.9억, LG전자 24.9억)

○ 지원 유형 : 고도화A, 고도화B, 고도화C, 고도화(동일수준)

- 유형 구분 : 고도화A와 B는 스마트공장 목표수준이 중간1로서 구축시스템 규모로 구분됨

고도화C는 스마트공장 목표수준이 중간2임

고도화(동일수준)는 중간1이상 수준으로 같은 수준임

*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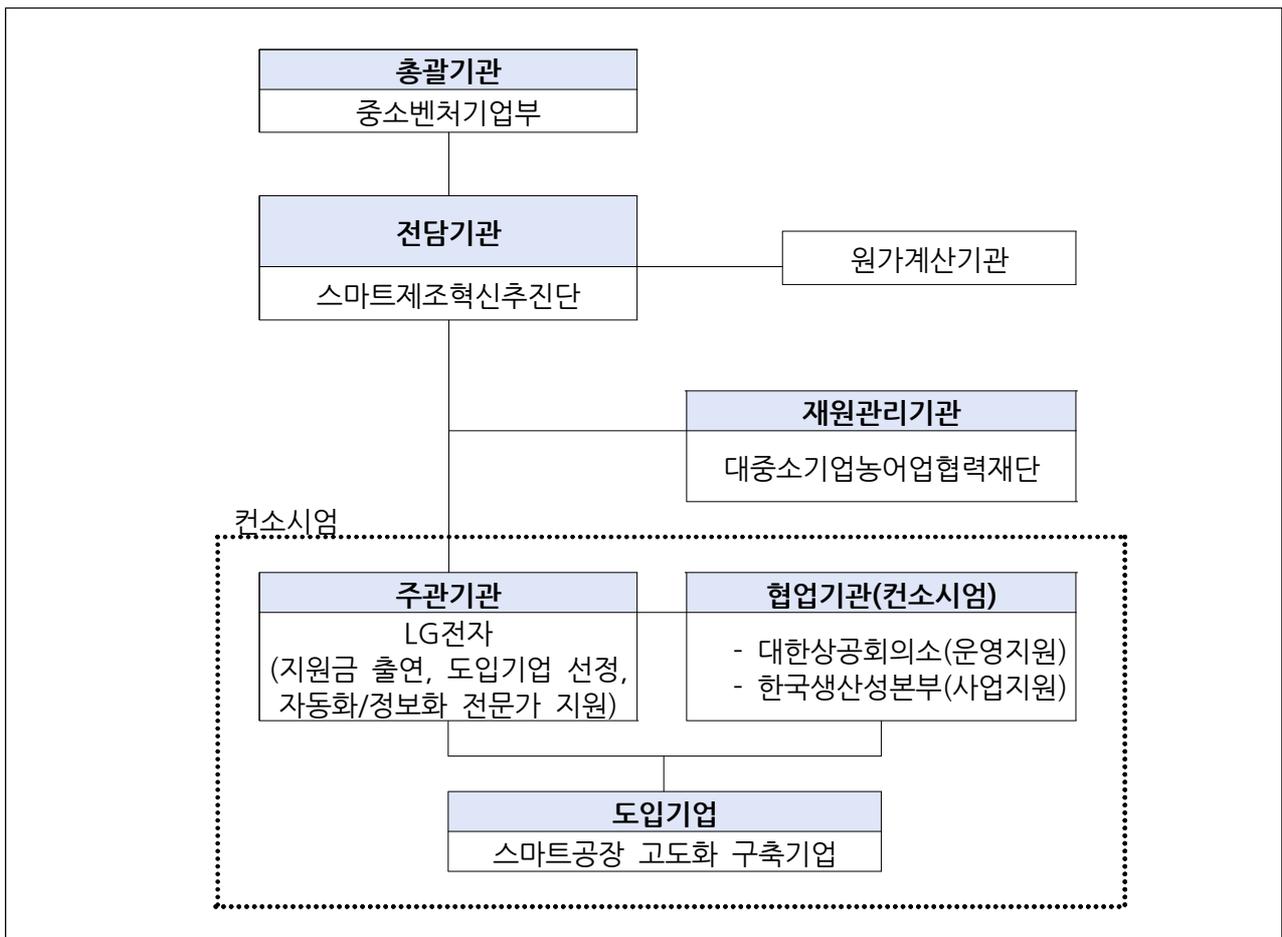
○ 지원 규모 : 지원유형별 기업당 최대 0.6~2.4억원 지원

- 정부 30% : LG전자 30% : 참여(도입)기업 40%

* 기업별 총 사업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참여(도입)기업에서 부담

□ 과제 수행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2024년 12월말 이내)

□ 추진 체계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생산 자동화, 공장 솔루션 구축 및 현장진단 / 원가계산 / 수준확인 등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유형별 기업수 및 사업 예산(구축비용 지원)

(단위: 억원)

구분	지원유형	목표수준	지원 기업수	정부지원	주관기관	도입기업	합계
분담금액 및 한도	고도화A	중간1	3개사	0.6	0.6	0.8	2
	고도화B	중간1	7개사	1.2	1.2	1.6	4
	고도화C	중간2	10개사	1.2	1.2	1.6	4
	고도화(동일수준)	중간1	9개사	0.3	0.3	0.4	1
비율	분담 비율	-	-	30%	30%	40%	100%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유형별 지원 기업수는 변동 가능

* 기업별 총 사업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참여(도입)기업에서 부담

□ 신청 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지원구분	
		기업규모	목표수준	협력사	비협력사
도입 기업	고도화 A/B/C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기업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X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 → 중간1, 중간2 → 중간2	○	X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승인 필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최대 2.4억원) 지원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 이상인 고도화, 고도화(동일수준) 신청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모든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 제출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8일(화) ~ 2024년 6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승인 필요 (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도입기업	공급기업
1	사업계획서 및 관련 문서		○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3	사업자등록증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X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기간 내에 있어야 함	○	X

□ 지원 절차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필수-집중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 지원을 위해 6개월간 A/S 서비스 지원

□ 선정 절차 및 방법

- 대상 : LG전자 연계 부품 협력사로 중소·중견기업
- 공고 및 신청/접수 :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대상 선정 : LG전자 생산기술, 구매조직 연계한 자체 기준에 따른 도입기업
적격여부 심사
 - 공장 최적화 관점의 자동화, 정보화 과제 우선 선정
 -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공정 자동화 과제 우선 선정
 - 생산 정보 연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제 우선 선정
 - CEO의 사업 참여 및 개선 의지가 강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인 ('23.2.28 개정)' 기준에 따른 주관기관(LG전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기업부담금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하며, 사업완료보고 시 해당 금액의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 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2,3 확인]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III. 문의 및 연락처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담당자	
주관기관	LG전자 대외지원팀	도입기업 모집 관련	김덕준 선임	dukjun.kim@lge.com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김형태 책임	02-724-1268 htkim@kpc.or.kr

붙임 1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붙임 3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장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단,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일부 비용 발생)
- (신청방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 신청
 ※ 세부 월별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문의) 김정섭위원(054-470-2704, jsub.kim@samsung.com)
- (교육과정) 총 31과정 운영

경영자	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 (임원급 인력) 스마트공장 추진방향, 추진사례, 우수업체 벤치마킹			
중간관리자	마스터 양성 스마트팩토리 4대 솔루션 기술분야별 실습, 우수업체B/M		현장혁신리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조원가,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	
실무자	공장 운영시스템 (5과정)	공정 시뮬레이션 (3과정)	제조 자동화 (7과정)	초정밀 가공 (1과정)
	현장혁신(11과정) 모델공장 현장학습 / 현장혁신기본 / 창고관리 개선기법 / 낭비개선 / 공정개선 / PRO-3M / 제조물류 / 품질혁신 / 공정품질관리 / 자재관리 / 품질기본			